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 안전총괄과

제정 2014· 8· 14 조례 제1060호
일부개정 2017· 8· 4 조례 제1332호
일부개정 2022· 8· 11 조례 제1851호
전부개정 2023· 8· 14 조례 제196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5에 따라 이천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이천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추진을 위하여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실천과제 발굴
2. 민·관 협력의 안전문화운동 전개
3.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입체적인 안전문화운동 홍보
4. 안전문화운동 우수사례 발굴
5. 그 밖에 협의회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전문화운동 관련 안건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내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당연직 위원장은 안전문화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1명은 제3조제4항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문화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전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안전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문화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문화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및 결과 등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23·8·14 조례 제1965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공동위원장)

(제3조제2항 관련)

제 호

위 촉 장

소 속
성 명

귀하를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위 축 장(위원)
(제3조제4항 관련)

제 호

위 축 장

소 속
성 명

귀하를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